

인천지방법원 2021. 1. 20 선고 2020가단20783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1. 2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7. 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2. 7. 접수 제445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 후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조용래

별지